

「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문화체육관광국장 박 영 일

### 나. 제안이유

-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의 개정에 따른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위반영업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규정하여 옥외영업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지역경제 활성화로 조례 목적 변경(안 제1조)
- 옥외영업 제한 지역 수정(안 제6조)
- 규정위반 옥외영업장 행정조치 명시(안 제8조)
-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보완 및 안전관리 규정 추가(안 별표1)
-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행위(단순가열) 허용(안 별표2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식품위생법」,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옥외 영업제한 지역을 수정하고, 휴대용 조리기구를 이용한 조리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기존 옥외 영업시간 제한에 진평 음식문화 특화거리만을 예외로 두었던 규정을 삭제하고, 전용주거지역은 22시까지, 그 외 지역은 24시까지 영업제한 규정을 둬으로써 영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영업장 인근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- 휴대용 조리기구를 이용한 가열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 옥외 영업의 제한을 완화하였으며, 화재·차량사고·대피로 확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영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추후 신고 대상 식당 등을 상대로 개정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여 기존 영업자 및 신규 영업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     략

5. 토      론      요      지

-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에는 근거 법령의 명확화가 필요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     음

7. 심      사      결      과: 수정가결